

「붙임 1」 공고문 1부.

「2026 경기농식품 나눔문화 확산」 모집 공고

김장나눔 확산으로 농산물 소비촉진 및 취약계층대상 지역사회 연대를 위한 「경기농식품 나눔문화 확산」을 아래와 같이 공모하오니 시·군별 지역단체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.

2026년 10월

경기도농수산물진흥원 원장

1 지원개요

□ 지원대상

○ 도내 단체등록증 등이 있는 주민자치위원회, 부녀회 등 지역단체

□ 지원규모: 총 30개소 내외(※ 사업비 이내에서 변경될 수 있음)

□ 추진절차

내용	일자	비고
사업 공고 및 접수	'26.10.16.(금) ~ 10.30.(금)	15일간
접수결과 보고 및 평가계획	~'26.11.2.(월)	1일간
단체 선정 및 결과 통보	~'26.11.4.(수)	
설명회 및 회계교육, 업무협약	~'26.11.5.(목)	교육관
선금금 지급	'26.11.6.(금)~	청구시 수시 지급
행사 진행 및 점검	'26.11.6.(금)~12.7.(월)	현장 점검
잔금 지급	'26.11.9.(월)~12.24.(목)	청구시 수시 지급
사업 성과 및 결과보고	~'27.1.15.(금)	

※ 사업추진 절차는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

□ 사업내용

○ 도 내 지역단체에서 농산물을 활용하여, 김장진행 및 사회취약계층 대상 기부추진

□ 지원금액

○ 1개소 당 5백만원 지급하되, 사업계획을 심사위원 평가·조정 후 지원

○ 사업비는 선정단체에 선금금 70% 지급 후, 사업완료 후 30% 지급함

※ 지원단체 신청·심사위원 평가결과에 따라, 참여단체(수) 및 개소당 금액 변경가능

□ 지원형태

- 사업비는 **김장관련 농산물 재료비, 운영물품(20%이내) , 홍보비(10% 이내)만** 지원

※ 농산물 허용 구매처: 농협하나로마트, 지역로컬푸드직매장, 마켓경기(온라인)

- **취약계층 대상 나눔 증빙 및 근거자료 필수제출**

- 사업계획에 따라 지출하되, 그 외 경비 또는 초과금액은 자체부담
- 사업완료 후, 단체별 사업완료 보고서(김장행사 사진, 김장기부 사진, 기부 영수증 등 포함), 지원금 정산보고서(증빙 서류(지정양식)) 제출

② 공모 및 선정계획

□ 모집·신청

- **공모기간: '26.10.16.(금) ~ 10.30.(금) 16:00**

※ '26.10.30.(금) 16시까지 이메일 도착분에 한함

- 신청방법: 이메일 제출

- 진흥원 홈페이지 입찰·공모란 게시 및 관련양식 등록(www.gafi.or.kr)

※ 제출서류 제목: **경기농식품 나눔문화 확산-단체명(00시·군) 제출**

※ 이메일 접수: gafi2026@naver.com 후, 담당자 확인전화(031-250-2795) 요청

- 제출서류 목록

번호	신청서류	부수
1	사업신청 공문 및 공모신청서(신청서식 1)	1부
2	단체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(※ 등록일 또는 설립일 표기본)	1부
3	사업계획서(신청서식 2)	1부
4	단체소개서(신청서식 3)	1부

□ 서면평가

- 일시·장소: '26.11.3.(화)/ 진흥원 2층 상황실

- 평가방법

- 내·외부 분야별 전문가위원단이 응모단체 항목별 객관적 점수측정

□ 평가심사 및 선정

- 선정단체는 최소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 응모단체에 해당

- 선정단체가 중도 포기할 경우 차순위 응모단체가 추가선정 됨

- 동점일 경우, 기부 대상자 명확성, 사업이해도 및 추진의지, 사업계획 타당성, 지원금액 집행 적절성, 사업지역 연계성, 사업수행능력의 고득점 순으로 평가

- 최종발표: '26.11.4.(수) 예정

③ 심사 기준표

평가항목		주요 평가내용												
사업추진 실행력 (90점)	기부 대상자 명확성 (10점)	■ 기부 대상자 선정 계획의 구체성 ■ 취약계층 선정 근거 타당성												
	사업이해도 추진의지 (20점)	■ 사업목적, 사업내용, 사업방향 등에 대한 이해도 ■ 응모기관 사업 추진의지												
	사업계획 타당성 (20점)	■ 사업추진을 위한 적절한 여건 및 지원 필요성 ■ 사업 추진내용의 구체성 및 실현가능성												
	지원금액 집행 적절성 (20점)	■ 지원금액 집행의 효율성 ■ 지원금액 집행계획의 구체성												
	사업 지역 연계성 (20점)	■ 사업추진 내용의 지역연계 파급효과 ■ 지역 취약계층기관 김장기부 실행가능성												
사업추진 역량 (10점)	사업수행능력 (10점)	■ 사업참여 단체구성원(수)(5점) - 단체 구성원 역할 및 적정인원 구성여부 (단위 : 명) <table><tr><td>구 분</td><td>6명 이상</td><td>9명 이상</td><td>12명 이상</td><td>15명 이상</td><td>15명 초과</td></tr><tr><td>점 수</td><td>1</td><td>2</td><td>3</td><td>4</td><td>5</td></tr></table>	구 분	6명 이상	9명 이상	12명 이상	15명 이상	15명 초과	점 수	1	2	3	4	5
		구 분	6명 이상	9명 이상	12명 이상	15명 이상	15명 초과							
점 수	1	2	3	4	5									
		■ 응모단체 활동기간(5점) - 단체 사업실행 가능성(※단체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 등의 설립일 기준) (단위 : 명) <table><tr><td>구 분</td><td>5년 미만</td><td>5년 이상</td><td>10년 이상</td><td>15년 이상</td><td>15년 초과</td></tr><tr><td>점 수</td><td>1</td><td>2</td><td>3</td><td>4</td><td>5</td></tr></table>	구 분	5년 미만	5년 이상	10년 이상	15년 이상	15년 초과	점 수	1	2	3	4	5
구 분	5년 미만	5년 이상	10년 이상	15년 이상	15년 초과									
점 수	1	2	3	4	5									

4] 유의사항

□ 사업비 정산

- 사업종료 후, 잔금 요청시 사업비 정산보고서 제출
- 정산방법: 자금지원 용도, 대상, 단가기준 등에 따라 해당 집행비용에 대한 적격 증빙서류 확인 후 정산 확정
 - 정산기준: 부가가치세 포함가로 실비 정산
 - ※ 「붙임 2 - 첨부 2」 신청서 양식 내 정산기준 참고
 - 제출서류 : 사업결과 및 정산보고서, 개별지출 증빙자료, 기부증빙자료 등
 - 지출증빙은 금융기관 거래 자료로 집행하며, 현금집행 및 간이영수증 제외됨
 - 사업 완료 후, 지원금의 집행 잔액과 사업기간 중도에 사업 포기하는 경우, 미집행금액은 전액 반납함
- 집행 및 정산신청 기한
 - 사업 추진기간 : 선정결과 통보일로부터 결과보고 작성 완료일까지
 - 사업비 집행기한 : `26. 12. 7.까지
 - 사업비 정산자료 및 결과보고 제출 : `26. 12. 18.까지
 - 제출서류 : 사업결과 및 정산보고서, 개별지출 증빙자료, 기부증빙자료 등
 - 지출증빙은 금융기관 거래 자료로 집행하며, 현금집행 및 간이영수증은 제외됨

□ 사업점검 및 결과보고

- 최종 사업 결과보고서 제출은 필수이며 상황에 따라 중간점검 가능

□ 선정사업자 취소 가능한 경우

- 선정기관에서 제출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
- 승인된 사업계획을 임의로 변경 운영하는 경우
-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계획으로 다른 기관으로부터 중복하여 지원금을 받은 경우
- 기타 관계법령, 규범 등에 저촉되는 경우에는 선정된 경우라도 무효 처리됨

□ 기타사항

- 적절한 선정 대상자가 없을 경우, 선정하지 않을 수 있음
- 제출된 제안서·서류는 선정여부와 관계없이 반환하지 않으며,
공모 결과관련 자체 평가사항은 비공개 원칙으로 함
- 선정심의에 따른 추가서류 요구 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함
- 공고내용, 일정 등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진흥원
누리집 공지에정